

[별첨1] 충남창업보육협의회 정관

CBIA Chungnam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충남창업보육협의회

충남창업보육협의회 정관

충남창업보육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충남창업보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충남지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충청남도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창업보육센터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보육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인력·정보 및 각종 연구 개발 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본 협의회는 주 사무소는 협의회장 센터 내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충남지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창업보육센터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 ③ 국내외 창업 및 창업보육정보의 수집, 창업보육체계구축 및 전파와 관련된 사업
- ④ 해외 창업보육 우수사례의 조사, 연구 및 전파와 관련된 사업
- ⑤ 중소·벤처기업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사업
- ⑥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의 성공률 재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 ⑦ 협의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 ⑧ 한국창업보육협회(KOBIA)와 관련된 제반업무 협조사항
- ⑨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협의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 본 협의회는 정회원은 충청남도내 대학, 연구소의 창업보육 사업의 책임자로 한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협의회의 추천에 의

하여 협의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① 창업보육사업에 관심과 공로가 많은 기업, 단체 및 공공기관
- ② 협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기업, 단체 및 공공기관
- ③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부터 추천받은 개인 및 단체

제8조 (명예회원) 본 협의회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원으로 하며, 협의회회 발전, 창업보육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협의회회 의결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협의회회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임원단 또는 총회에 대하여 협의회회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협의회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협의회 사무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격의 상실) 각 회원이 협의회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협의회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협의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구성) 본 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5인 이내(충남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장 포함)
3. 감 사 : 1인 이내
4. 사무국장 : 1인

제13조 (선출) 임원은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부회장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에 수석부회장 1명을 선임한다.
- ④ 감사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회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사무국장은 회장이 소속한 센터의 매니저로 한다.

제14조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①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궐위 시 제16조에 따른다.
- ③ 부회장 및 감사 궐위 시 그 소속 센터의 센터장이 승계한다.

제15조 (직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수행을 도와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감사는 본 협의회 세입·세출·예산 등 제반 회계를 감사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제반 행정업무 및 사무를 총괄 한다.

제16조 (회장의 승계) 회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회장을 승계한다.

제17조 (협의회 조직)

- ① 협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매니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 및 매니저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 소집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결정)

- ① 본 협의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회의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협의회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주요사업계획 승인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 창업보육사업을 위한 건의사항
- ⑥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회계연도)

- ①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정)

- ① 본 협의회 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② 본 협의회 회계수입은 회원의 회비 또는 출연금, 찬조금, 기부금, 특별헌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의 원칙 및 구분)

- ①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 ② 회계는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 및 사업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제24조 (회계보고)

- ① 회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할 경우 결산서는 업무현황, 재산 목록 및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24조 (회비) 각 회원에 대한 회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① 정회원은 회비납부에 의무를 지며,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제26조 (출납) 협의회는 자금 출납은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해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협의회를 해산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26조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협의회는 잔여 재산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0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18년 5월 24일 개정

제6조 (정회원)

제12조 (구성)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23년 12월 1일 개정

제14조 (임기)